

『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시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춰 조례내용 개정 및 오탈자,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 세출에 관한 내용을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일치토록 개정
- 조례 제3조 세입에 관한내용을 근거법률 변경에 따른 개정 및 신설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조, 제33조, 제35조, 제36조, 제43조, 제49조
 -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 제15조
 - 「주차장법」 제8조, 제9조, 제14조, 제19조, 제24조의2, 제30조
 -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15조
 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88조, 제94조
 -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1조, 제70조

- 「도로법」 제66조
- 「도로교통법」 제160조, 제161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규제개혁 T/F팀, 청렴정책팀과 합의

5. 검토의견

- 본 『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,
 - 상위법인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에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,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추어 용어정리, 오탈자,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